

부산지방법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813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12, 13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7.50㎡을 인도하라.
나. 2,6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0. 30.부터 2023. 12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23. 10. 30.부터 위 가.항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3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정우

별지